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94 발의연월일: 2025. 3. 31.

발 의 자: 김기표 · 김성환 · 박정현

김준혁 • 문진석 • 이병진

노종면 • 위성곤 • 신영대

전재수 · 장경태 · 이재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또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권한쟁의심판 결정 과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가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의 근본적인 법치주의가 무너 지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 또는 공 권력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인용 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해당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 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의 실효 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0조 신설).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제66조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하지 아니한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
 - 2. 제75조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결정서 정본 을 송달받은 즉시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의 피청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

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 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66조제2항을 위반하여 헌
	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부작위에 대하
	여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을 인
	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결
	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
	지 아니한 권한쟁의심판의 피
	<u>청구인</u>
	2. 제75조제4항을 위반하여 헌
	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
	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심
	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
	에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
	운 처분을 하지 아니한 헌법
	소원심판의 피청구인